
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19. 7. 17.(수) 총 13매(본문 5, 참고 8)	
담당 부서	도시교통과 신교통개발과	담당자	·과장 박준상, 팀장 오송천, 사무관 박효철, 전철주 ·☎ (044) 201-3817, 4770, 4756, 4772	
보 도 일 시		2019년 7월 17일(수) 09:00시부터 보도 가능.		

택시와 플랫폼의 혁신과 상생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

- 국토부, 「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」 발표

-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「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」을 발표하였다.
-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,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
 -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,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, 상생발전,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.
 - 이를 위해 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, ②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, ③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.

< 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>

- 우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마련된다.
-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, 차량,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.
 -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추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,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.
 -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,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.
- 둘째,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.
 -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하여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셋째, '카카오T'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활성화한다.
 -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.
- 3가지 유형을 통해 다양한 혁신이 시도되어 국민편익이 제고되고 각 유형간 공정한 경쟁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.

< ②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>

-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.
-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 -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(전액관리제)과 택시법(주 40시간 이상 보장)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(TIMs)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한다.
-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.
 -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,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.
-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,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하여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,
 -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.

< ③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>

-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,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.

-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,
 -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, ‘불법촬영’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,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‘원 스트라이크 아웃제’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.
 -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, 사고 발생시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.
-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 안심,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,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.
 - 다만,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하여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.
- 승차거부 없고,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이 강화된다.
 -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,
 - 서비스·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,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은 “금일 발표한 「택시제도 개편방안」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”이며, “택시, 플랫폼 업계,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「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박효철 사무관(☎044-201-475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1. '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'가 무엇인가요?

- 기존 택시와 같이 단순 운송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(App) 등을 통해 사전예약, 실버 케어, 여성 안심, 반려동물 동승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임
 - 차량도 기존 택시 이외에 대형차, 승합차 등 다양한 차종과 디자인의 차량을 선택 가능
- 정부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보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출시할 수 있도록 차량, 요금 등에서 보다 유연한 규제환경을 조성할 계획임
 - 이렇게 되면, 고객들은 필요와 기호에 따라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
- 한편, 기존 택시도 가맹사업 등의 형태로 플랫폼 택시로 변환 가능

2. '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'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?

- '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'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어 있고,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
 - 카카오T, 웨이고, 마카롱 등이 모두 플랫폼 택시의 일종으로, 호출형(카카오T) 또는 브랜드형(웨이고, 마카롱) 플랫폼 택시에 해당
- 정보통신기술 발달, 공유경제 확산 등으로 앞으로 이러한 앱 기반의 중개서비스 기능 등을 활용한 플랫폼 택시는 지속 증가할 전망
 - 따라서, 공정한 경쟁, 소비자 보호, 사회적 갈등 예방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
 - 이에, 금번에 택시 및 플랫폼 업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음
 -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시행에는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제도 하에 정식절차를 거친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 데는 다소의 시일이 필요
 - * 금년 정기국회 이전에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준비(국회 심의 및 의결절차가 필요없는 하위 법령 개정은 금년 내 완료)
- 하지만, 새로운 제도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(실증 규제특례)를 활용하여 참신하고 혁신적인 많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고, 국민께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것임
 - * 앱기반의 자발적 택시 동승중개 서비스인 '코나투스' 사업계획 승인('19.7.11)
- 꼼꼼하게 준비 하겠으나,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완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

3. 택시, 앞으로 뭐가 달라지나요?

- 필요,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 가능하게 될 것임
 - 금번 제도개편을 통해 새로운 운송서비스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법률 리스크가 크게 해소될 것이며, 스타트업들은 마음껏 참신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집중 가능
 - 안전 등 필수 규제 이외 차종, 차량 내·외관, 요금 등의 서비스 규제는 대폭 완화할 계획
 - 자녀 통학, 여성우대, 실버 케어, 관광·비즈니스 지원,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며,
 - 보편적인 중형 자동차(2,000cc 급) 외에 필요에 따라 고급형 자동차(2,600CC 이상), 승합차 등 다양한 사이즈의 차량 이용도 가능

- 더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가 될 것임
 -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운송사업이 가능하겠으나, 시민안전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운수종사자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할 것임
 - 어떠한 유형의 플랫폼 택시이든지 운수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,
 - 주기적인 범죄사실 조회를 통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
 - * 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위에 성폭력 처벌법상의 성폭력, 성추행 외에 ‘불법촬영’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
 - 아울러, 플랫폼 택시의 영업용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, 기존 택시의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검사를 본격 시행할 계획

4. 이제 승차거부는 없어지고, 택시 잡기 좋아지나요?

그동안 승차거부, 과속 등 불친절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'사납금 제도'임

* 사납금이란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 수익금(약 13.5만원)으로, 만약 당일 소득이 사납금에 못 미치는 경우 월급에서 공제

○ 이러한 사납금 제도의 완전 폐지와 월급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지난 7.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음

○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 도입시 승차거부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

아울러, 플랫폼 택시가 활성화되면 강제 배차, 사전예약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며,

○ 택시 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

5. 새로운 제도가 중소기업의 플랫폼 업체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과도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?

- 금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취지 중 하나는 플랫폼 업체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임
- 현재 법인 및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허가 및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,
 - * (법인) 차량(서울 50대 이상), 차고지(대당 13m²~15m²), 부대시설 등 구비 (개인) 최근 6년내 법인택시 운전 + 5년 무사고 경력(지자체에서 1/2 경감 가능)
- 특히, 개인택시는 대부분 유상으로 면허권을 확보하고 있음
 - *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('19.2) : 서울 75~80백만원, 경기 126백만원 등
- 따라서, 그 간 엄격한 면허제도와 규제를 적용받아 온 기존 택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플랫폼 사업자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
 - 다만, 플랫폼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여금 납부는 임대료 방식의 분납을 기본으로 하고, 원하는 경우 일시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
 - 구체적인 사회적 기여금의 규모 및 납부방식 등은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

6. 금번 대책으로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기존 택시업계의
불만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지?

- 택시와 플랫폼 업체는 금년 봄 수차례의 대화와 논의를 통해 3.7일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성숙된 경험을 갖고 있음
 - 금번 대책마련 과정에서도 국민 편의 향상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에 많은 공감감이 있었음
 - 기존 택시도 자체적인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도록 월급제(법인), 면허 양수조건 완화 및 부제 완화(개인)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임

7. 입법화 등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?

-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,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완료를 목표로 추진
- 빠른 시일 내에 택시 및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